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0-56호

- 2020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필기시험 장소 및 수험생 준수사항 공고

2020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수험생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I. 시험일정

□ 시험일자 : 2020. 10. 17.(토)

□ 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 10:00 ~ 12:20(140분간)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기술계고), 지도사 : 10:00 ~ 11:00(60분간)

- 9급(조리) : 10:00 ~ 10:40(40분간)

※ 수험생은 **08:20부터** 해당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II. 시험장소

□ 직류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붙임1」 참고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시험장(학교)의 교내 차량출입이 불가하며, 수험생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가족 및 지인 출입 불가)

※ 시험장소(학교)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될 경우 예비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며, 변경장소는 개별 문자메세지로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Ⅲ.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 시험응시 불가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별도시험장 시험 응시

- 응시자 중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별도시험장 시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중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도 신청 가능

◎ 별도시험장 시험 신청절차

- 사전 신청기간 : 2020. 10. 8.(목) 09:00 ~ 10. 16.(금) 18:00까지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신청방법 : 전라북도 시험시행본부 사전 연락후(사전 유선신청 반드시 요함),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연 락 처 : ☎063-280-2266, 4218

- 제출서류

1. 별도시험장 시험 신청서[서식1] / 2. 격리통지서 사본

- 제출처

(우 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총무과 2층 공무원채용팀
(이메일) lettre21@korea.kr

※ 자가격리 사전신고 대상자에게 시험방법 등은 향후 개별 안내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해제확인이 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증상이 의심되어 사전 신청한 자 → 발열체크, 의료반 문진 후 경중에 따라 예비 시험실 응시(1인 제한) 또는 보건소 이송

- 사전 신청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제8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사전 신청기간 : '20.10.8.(목) 09:00 ~ '20.10.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유선으로 사전 신청 / 연락처 : ☎063-280-2266, 4218

□ **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에서 발열체크 후 이상 증상이 없는 응시자**
⇒ **일반 시험실 응시**

- 시험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입장 가능**하며,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 후 시험실 입실하고, **시험 중에도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독관이 응시자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 ⇒ **예비 시험실 응시**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의 경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문진표를 작성 후 예비 시험실 응시여부를 결정하며, 일반 응시자와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예비 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장 입실(퇴실)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 전라북도 시험시행본부에서는 모든 시험장에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아래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수칙]

- ▶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모든 시험장은 08:2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 시험 종료 후 고사장을 벗어날 때 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 착용 시 고사장 출입 불가**
-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발열체크 진행에 협조**해야하며, 발열체크 대기 시 **응시자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이상 유지**하여 주시고, 방역담당관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방역담당관 문진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제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조치)
- ▶ 발열체크 후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하며,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시에도 반드시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 후 시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니 따뜻한 외투를 지참하시고, 이로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바랍니다.
- ▶ 감염방지를 위해 **시험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휴지, 덧신 등)는 본인의 가방 등에 넣어** 직접 가져가 주시고, 시험장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 시험 종료 후 퇴실 시 인원분산을 위해 저층시험실별로 **순차적으로 퇴실** 할 수 있으니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시험실을 이용한 응시자는 타 응시자가 모두 퇴실한 이후에 귀가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위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V. 수험생 준수사항[일반 준수사항]

-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시험장소·교통편·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지정된 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생명의삶터, 천년전북!

-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 4가지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증, 공무원증 등 인정 불가)

※ 응시표 출력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개명자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개명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개명허가 결정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시행본부에서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하거나,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연필이나 볼펜 등 사용 불가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 표기하여야 합니다.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부주의로 잘못표기(미세한 이중표기, 번짐, 예비표기 등)한 경우에는 답안지 판독이 되지 않거나 중복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답안지의 지정된 기입란 이외에 낙서 및 메모를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또한 수험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답안지로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온 것만을 사용하며, 시험시행본부에서는 수정테이프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 도중 수정테이프를 다른 수험생에게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 수정테이프 사용시 해당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2020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9호, 2020.2.24.)」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순서 및 「2020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조리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33호, 2020.7.28.)」 과목 순서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목이 있는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입니다.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의 인적사항 및 책형 미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 ※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시행본부에 방문하여 답안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 시험 당일 모든 학교에 차량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장 부근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여 교통단속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학교)은 금연구역으로 절대 흡연은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불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고,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단, 시험시간이 140분인 7급(행정) 응시생은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한하여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 및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1회(10:30~12:00까지)에 한하여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소지, 화장실 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
 -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생명의삶터, 천년전북!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제 외에 **전라북도 자체출제 문제 및 호남권 공동출제 문제는 비공개 문제로 전량 다시 회수합니다. 비공개 문제를 필사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4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출제과목

| 구분 | 과목 | 비고 |
|---------------------|--|---------------------------------------|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과목 |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기술계고)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재배 | 공개문제 (시험종료 후 문제를 가지고 귀가 가능) |
| 호남권 공동 출제과목 | (지도사)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학, (기술계고) 농업생산환경, 환경보건, 공중보건 | 비공개문제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전량 회수) |
| 전라북도 자체 출제과목 | (조리) 사회, 위생관계법규 | |

※ **인사혁신처 출제문제 정답 가안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1. 정답공개 일시 : 정답가안 10.17.(토) 14:00 / 최종정답 10.26.(월) 18:00
2. 정답공개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시험문제/정답 → 문제/정답 안내]
3. 이의제기 기간 : 10.17.(토) 18:00 ~ 10.20.(화) 18:00
4. 이의제기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문제/정답 → 정답 이의제기]

- 본 공고문 및 답안지 상 수험생 준수사항과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그리고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거나,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험생 준수사항을 정독하고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V.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가산점 등록기간 : 2020. 10. 17.(토) 09:00 ~ 10. 21.(수) 18:00

- 등록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입력
 -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OC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상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VI. 부정행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1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2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비공개 문제를 필사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